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4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5.

발 의 자 : 최형두 · 김기웅 · 서일준
김기현 · 강승규 · 서천호
성일종 · 박성민 · 윤영석
박충권 · 김예지 · 우재준
한지아 · 정성국 · 김태호
권영진 · 김종양 · 조정훈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승인서와 준공확인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8조의3(조성토지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

고, 로봇랜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각·임대 대상 토지·건축물 등의 용도, 매각·임대 및 위탁 경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u> ① <u>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u> ② <u>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승인서와 준공확인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u> ③ <u>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u>

<신 설>

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제38조의3(조성토지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 및 제40조제2항
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
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조
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
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로
봇랜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할 수 있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타인
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
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각·임대
대상 토지·건축물 등의 용도,
매각·임대 및 위탁 경영의 절
차·방법 및 대상자, 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